

Supplementary Table 1. 질병,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

질병·심신장애의 정도	평가기준(단위: 급)		
	병역	전역	전시
80. 경련성 질환			
가. 현증이 의심되나,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	7	7	7
나.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나,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	2	2	2
다.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			
①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(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·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,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)	4	4	4
② ①에 해당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·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(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	5	5	5
라. 확인된 경련성 질환(뇌파검사,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	5	5	5
마.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(기억력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)	6	6	6
246. 난치성 뇌전증(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)	5	5	5

평가기준란 중 전역란은 제2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,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른 전시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.

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(국방부령 제968호, 2018. 9. 17., 일부 개정), [별표 3].